

# 경기영상위원회 촬영지원 규정

## 제1조 (목적)

경기영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는 경기도에서의 영상물제작을 위한 합리적 환경 개선 및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, 영상물촬영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영상산업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구이다. 위원회는 영상물 제작 단체 및 개인(이하 "신청인")과 촬영장소 관할권자 간의 매개 및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, 영상물 창작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경기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촬영 여건을 조성 영상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. 이에 본 규칙은 신청인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정의)

### 1. 장소섭외 지원

"장소섭외 지원"이라 함은 촬영 장소 허가를 위한 장소물색, 장소정보파악, 섭외를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.

### 2. 로케이션촬영

"로케이션촬영"이라 함은, 촬영스튜디오 등 영상물 촬영 전용공간 이외에서 진행되는, 촬영과 관련 없는 3자가 그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촬영을 말한다.

## 제3조 (지원내용)

### 1. 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경기도 내 장소섭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 지원

나. 경기도 내 로케이션 촬영지 촬영 허가 지원

다. 기타 촬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가 촬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2. 장소섭외 지원 사항

가.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로케이션의 사진 자료 및 기본 정보 제공

나. 별도 요청이 있을 때 오프라인을 통한 추가 자료 및 정보 제공

다. 필요 시 동행 답사

※ 단, 촬영 허가 등을 위해 영상위원회 담당자의 동행 및 협의 배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

### 3. 로케이션촬영 지원 사항

- 가. 촬영에 필요한 허가 사항 지원
  - 나. 촬영에 필요한 공공 장비, 인력 등의 지원
  - 다. 주차지원
  - 라. 영상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대 시민 홍보지원
  - 마. 외국영화가 국내에서 촬영하는 경우, 교통 숙박 등 현지촬영에 필요한 편의 주선
  - 바. 기타 촬영을 위해 영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사. 신청인과 위원회간 협의 후 지원내용 및 범위 결정  
지원 여부 및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신청된 영상물의 제반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상위원회가 결정함.

### 제4조 (지원대상)

영상위원회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국내외의 모든 영상제작물

### 제5조 (제한사항)

- 1. 영상위원회에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영상위는 지원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다.
- 2. 사적 소유물 및 소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### 제6조 (신청인의 신청절차)

- 1. 장소섭외 지원
  - 가. 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의한 웹사이트상의 자료 이용
  - 나. 오프라인상 추가지원 요청 시 별도양식의 로케이션촬영지원신청서(이하 "신청서")접 수
    - 1) 첨부서류 : 지원신청내용별세부적요(이하"세부적요") 각 1부, 시나리오 1부, 장면구분표 1부
    - 2) 접수기한: 촬영지 답사 예정일 2주전
- 2. 로케이션촬영 지원
  - 가. 신청서 접수
    - 1) 첨부서류 : 세부적요 각 1부, 시나리오 1부, 제작기획서 1부, 장면구분표 1부, 스텝 연락처 1부, 촬영내용 콘티 1부, (학생영화의 경우)학생증 사본 1부
    - ① 필수서류: 신청서 1부, 시나리오 1부, 장면구분표 1부

② 추가서류 : 지원신청 별 세부적요 각 1부, 제작기획서 1부, 스탭연 락처 각 1부, 콘티 1부  
※ 필수서류 접수시 신청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하며, 영상위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
추가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.

- 2) 접수기한: 촬영 예정일 2주전. 단, 접수 일은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짜로 한다.
- 3) 참고사항: 신청내용에 따라 첨부서류 및 접수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"지원사항별 세칙" 참조할 것,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나. 신청인과 위원회 간 협의 후 지원내용 및 범위 결정. 지원여부 및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신청된 제작 여건의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함.

### 3. 접수방법

지원신청은 우편, 팩스, 이메일,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. 신청서는 각 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팩스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.

## 제7조 (신청인의 의무)

1.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다.

### 가. 기한준수 및 서류제출 성실의 의무

- 1)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위원회는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.
- 2) 신청인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.
- 3) 변동사실 신속고지의 의무

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사항(촬영장소, 촬영장면의 종류, 일정 및 인원 장비수 등)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변경 취소할 경우 촬영지 관할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는 위원회에, 촬영지 확정 후에는 위원회와 관할처에 즉시 사실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.

### 나. 촬영취소 및 연기

신청인은 촬영일정의 변동으로 인해 허가된 촬영 일에 촬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소 2일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재촬영 및 재허가를 위한 기간은 관할기관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다. 촬영지 보호의 의무

신청인은 촬영 중 발생한 오물 및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, 변형되거나 훼손된 건물 및 기물 등을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. 또한 촬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 내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철거할 경우 영상위에 원상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훼손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.

## 라. 시민불편 최소화 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

- 1) 신청인은 촬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3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2) 신청인은 사전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촬영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없다.
- 3)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약서 내지 각서 제출, 혹은 적절한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제8조 (신청인의 협조사항)

1. 신청인은 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촬영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직원의 입회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영상물촬영 등에 협조해야 한다. 단, 이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.
2. 신청인은 위원회의 데이터취합을 위해 신청대상영상물의 포스터, 리플렛, 보도자료, 현장사진, 예고편, 메이킹 필름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.
3. 신청인은 위원회의 지원과 관할기관의 협조로 촬영을 진행했을 경우, 이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영상물 혹은 홍보물 상에 나타내야 한다.

## 제9조 (지원중지)

1.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, 기타의 사유로 2회 이상 시정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촬영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달리 촬영지 훼손 및 이미지 실추의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촬영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10조 (책임)

신청인의 위원회에 대한 촬영지원신청은 본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, 위원회의 지원으로 촬영되는 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.